투자설명서 변경 내용

□ **대상펀드명** : 트러스톤아시아장기성장주증권자투자신탁(H)[주식]

□ **효력발생일**: 2015. 2. 23.

□ 정정 사유 :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신탁 추가

□ 정정 내용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세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	2014 11 20	2045 4 24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4.11.30	<u>2015.1.31</u>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퇴직
다. 모자형 구조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u>연금 펀드</u>
	자투자신탁 추가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연금
		<u> 저축 펀드</u>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 트러스톤 아시아장기성장주 퇴직
사항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u> </u>
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	자투자신탁 추가	- <u></u> -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연금
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에	7177123 771	<u> </u>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u> </u>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개인 15.4%(<u>주민세</u> 포함), 일반	<u>15.4%(지방소득세 포함)</u>
관한 사항	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
나. 과세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	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u>, 지방소득세</u>
	15.4% (소득세 14%, <u>주민세</u>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
	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	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	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
	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	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



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 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 (최고한도 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 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 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 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 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 이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사 고유자산 투자계획 기재

- 투자목적
- 1) 한층 더 책임감 있는 운용으로투자자들의 펀드 운용에 대한 신뢰도 증가
- 2) 설정 초기 펀드의 적정 운용규모를 확보하여 안정적 운용이 가능
- <u>투자계획</u>: 모집개시일(2014년 12월 30일)에 110억을 투자
- 투자금액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자

투자신탁(H)[주식]: 90억

트러스톤 아시아 장기성장주 증권자

<u>투자신탁(UH)[주식] : 20억</u>

-투자기간 및 회수 계획

1) 최초 투자일로부터 최소 3년 이

상 유지할 계획

2) 안정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하도

록 최초 환매시점 결정 이후 최소3

회 이상 분할하여 환매

